

##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3년 4월 1일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4월 1일

3. 제안 이유

-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가 제정(조례제2676호, 2001.10.12)되어 우리도의 우수한 농산물에 대하여 충청북도 추천 농특산물상표사용 승인 사업을 추진하였으나
- 지역우수 농특산물의 육성을 위하여는 시·군에서 품목별로 공동상표를 제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여(농림부 권장사항, 농림업무평가시 적용) 시·군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본 조례를 폐지함

4. 주요 골자

-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 폐지

## 5. 검토 의견

-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여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여 승인한 조례로서
- 최근의 지역우수 농특산물의 상품인증 실태를 보면 시·군에서 품목별로 고유브랜드화하여 인증 상표를 제작 집중홍보 내지는 육성하는 추세이므로 시·군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충청북도에서는 본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
- 다만, 무분별하게 각 시·군에서 농산물 상표를 제작 운영함에 따른 부질서 내지는 과다경쟁의 우려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